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검토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1월 1일
- 회부일자 : 1993년 11월 3일

3. 제 안 이 유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1991.6.19) 제 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현행 충청북도교육위원회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4. 주 요 골 자

-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을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
하고, 직인의 종류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충청북도교육위원
회소위원장,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함(안제2조)
-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를 충청북도교
육위원회인 3.6cm,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인 2.7cm, 충청북도교
육위원회소위원장인 2.4cm,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장인 2.1cm로 하며,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명칭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도록 함.

- 공인의 교부기관을 의사국장으로 하며, 공인을 간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사과장이 재교부 요청도록 함.(안제5조 내지 제6조)
-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며, 이때에는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공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공인명 또는 인영, 공고기관의 장을 명시하도록 함.

5. 검 토 의 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공인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관인 규칙에 의하여 시행해 왔으나,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91. 6. 19)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관인규칙을 폐지하고 공인의 종류, 규격, 인영에 관한 사
항과 공인의 교부, 재교부, 공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무관리
규정 개정과 교육위원회 개원 시점을 비교해 볼 때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6. 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 첨